

2020년도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8. 19.(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위원,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6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명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741건(안건번호 제2020-95546호~9696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95546호~96969호는 모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므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45건(안건번호 제2020-2530호~2574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8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37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7개 안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제공 거절 사실이 없는 1개 안건(1개 안건은 부결 사유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최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6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발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차 회의록 9쪽, 20쪽, 24쪽, 31쪽에 자구 수정 의견을 주셨음. 전차 회의록 6쪽, 7쪽에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회의록에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은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2호 안전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므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제3호 안전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은 모두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0쪽~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16쪽~3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tvN', '이십세기폭스', '일본 Tokyo MX', '영국 Channel 4', '미국 FOX', '소니 픽처스', '윌트디즈니컴퍼니', 'OCN', '워너브라더스', 'Adobe Systems Inc', '한글과컴퓨터', 'Autodesk Inc',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

2020. 7. 29. 개봉했고 심의일 하루 전인 2020. 8. 18. IPTV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20. 8. 18. 기준 관객수는 1,744,028명임.

(SW 'Adobe Premiere Pro CC 2020'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 번호 제2020-95992호는 웹하드에서 18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심의 대상 게시물의 용량은 1.8GB임. Adobe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월별 37,000원이고 연간 선불은 277,200원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건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건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95546호~9696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멤버 수가 적은 밴드도 일반 공중의 검색이 가능하여 공중에 제공되었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심의대상 안건들은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95546호~96969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8쪽부터 1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530호~2574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8개의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고, 나머지 37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7개 안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제공 거절 사실이 없는 1개 안건(1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o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8. 26.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오영주